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1.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대개협 제23-0036호(2023.6.22.)

"잠복결핵검사(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2. 귀 단체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 답변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
- 「결핵예방법」에 따른 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중 사.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산정하여야 함
- 고시 제2017-265호('18.1.1. 시행)에 따른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등의 특정 대상 외에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용함.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전결 07/07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327

2023.07.0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